

나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역량 강화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지역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운영 중인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2025년 8월 27일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이사장

1. 교육개요

(교육목적)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력 창출 및 농산물 가공 장비 활용 실습교육을 통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25. 9. 9.(화) ~ 9. 11.(목)
- 교육장소: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8(동수동)
- 주요시설: 전처리실, 가공실(떡, 반찬, 건조·건식 등), 사무실
- 교육과정/횟수: 2과정(위생교육 및 장비실습교육) / 3회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5. 8. 27.(수) ~ 9. 5.(금) (10일간)
- (모집인원) 10명(선착순 선정)
 - 1순위: 가공센터 사용허가 승인자
 - 2순위: 가공센터 사용허가 심의 예정자
 - 3순위: 가공센터를 활용하여 농식품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신청자격) 나주시에 주소를 두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따른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2동 사무실
 - 우편신청 : (58275)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8 농산물종합가공센터
 - 이메일신청 : nongminga0@gmail.com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붙임)
-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실제 거주지 증명서류(주민등록 등본)

(선정발표) 2025. 9. 8.(월), 개별연락

3. 기타사항

- 신청서, 제출서류 등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단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061-333-9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